##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07

발의연월일: 2021. 12. 27.

발 의 자 : 아수잔비ㆍ김영배ㆍ박 정

서영교・소병철・소병훈

유정주 • 이광재 • 이수진

이원욱 · 정성호 · 한병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립공원의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, 사찰림,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, 이에 대한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·관리뿐만 아니라 그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

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4호). 법률 제 호

##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"보전·관리"를 "보전·관리하고, 그 가치를 증진" 으로 한다.

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비용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공원보호협약의 체결)	제20조의2(공원보호협약의 체결)
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	①
경관을 효과적으로 <u>보전·관리</u>	보전·관리
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, 그	하고, 그 가치를 증진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	
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와	
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	
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	
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3조(보조) 국가는 예산의 범위	제43조(보조)
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	
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
	추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
	른 지원에 관한 비용